



경 기 도



수신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경유)

제목 「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」 안내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하고자 불임과 같이 공고한바('20.05.21.) 있습니다.
3. 해당 사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받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문의기간: '20.05.21.(목) ~ 05.28.(목)

나. 내 용: 모집공고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위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E-mail (persky89@gg.go.kr / 정정식 주무관)로 [불임]양식에 따라 작성

※ 위 기간외에 유선문의는 답변불가

4. 아울러, 공고 및 질의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(게시판, E-mail)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.

불임 1. 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1부.

2. (양식)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질의 1부. 끝.

경 기 도 지 사 인



주무관 정정식 지하안전팀장 김계수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전결 2020. 5. 25.

협조자

시행 건설정책과-9603 (2020. 5. 25.) 접수

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, (신곡동) / <http://gg.go.kr>

전화번호 031-8030-4125 팩스번호 031-8030-3639 / persky89@gg.go.kr / 대국민 공개

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

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

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근거 법령

- 가.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- 나.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, 제100조(안전점검의 시기·방법 등),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
- 다.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

2. 공고 목적

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시공사(도급자)가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안전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‘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’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

3. 안전점검 수행 대상

도 발주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

<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>

- 가.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- 나.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
- 다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- 라.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마. 천공기(높이 10m 이상), 항타 및 항발기,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
- 바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¹⁾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- 사. 그 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공사

1)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,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,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)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,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,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
4. 참가 자격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,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(법인등기부상 경기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)
- 나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(토목), 안전진단전문기관(종합), 안전진단전문기관(건축) 등록된 업체

5. 제출자료

- 가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 (양식1 서식)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 (양식2 서식)
- 다.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.
- 라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,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, 법인의 경우 직적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각 1부.
- ※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

6.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
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	'20. 5. 21.(목) 15:00	○ 경기도 홈페이지 (http://www.gg.go.kr) - '뉴스 - 공고·입법예고 - 고시·공고'
신청서 등 제출서류	'20. 5. 21.(목) 15:00 ~ '20. 6. 9.(화) 15:00 (모집공고 기간 : 20일)	○ 방문접수 (<u>이메일, 우편접수 무효</u>) - 담당자 :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 이돈균 (8030-4122) 주무관 정정식 (8030-4125) ※ 마감일시까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(접수증 교부) 미확인(접수증 미 수령)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 모자에게 있음.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	'20. 6. 10.(수) 17:00	○ 경기도 홈페이지 (http://www.gg.go.kr) - '뉴스 - 공고·입법예고 - 고시·공고'

7. 기타 사항

- 가. 방문접수시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,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바랍니다. (등록시 사용인감 날인)
- 나. 수행기관 관리기간 (명부관리 기간)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. (관리기간 : '20. 6. 10. ~ '21. 6. 9.)
- 다. 관련 문의는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 이돈균 · 정정식(031-8030-4122, 4125)로 하시기 바랍니다.

8.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(향후)
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	별도 안내	○ 시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－ ‘안전점검 전문기관’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(道 건설공사 발주부서) － 경기도 홈페이지 (http://www.gg.go.kr) ‘뉴스 - 공고·입법예고 - 고시·공고’
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(평가) 및 지정	별도 안내	○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세부평가 기준)에 의한 평가 ※ 세부평가기준은 ‘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’ 시 공개

※ 추진 일정은 경기도 건설정책과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5. 21.

경 기 도 지 사

- 별지 1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
2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 끝.

(별지1)

접수번호	
------	--

--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

(경기도 안전점검수행기관 공개모집)

신청분야 : 토목[] 건축 [] 종합 []

※ 해당분야에 “ ○ ” 표기

2020. . .

회 사 명

전화번호

FAX번호

담당자명
[전화번호]

(양식1) 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7호서식]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공고마감후 1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

신청인	상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성별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
신청분야	토목분야 [] 건축분야 [] 종합분야 []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조제1항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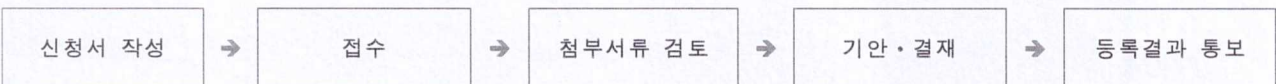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

전문분야(세부분야)		()		등록번호					
상호 또는 법인명				성명 (대표자)					
소속 국가명				등록일					
사무실	소재지	(전화)		확보 구분					
	순사무실 면적	㎡		입주 연월일					
자본금	납입자본금		변경 연월일		실질자본금				
	• 금액 • 외국인 투자율 • 외국인 투자금액								
장비 보유 현황									
취득일	품명	규격	수량	처분일	취득일	품명	규격	수량	처분일
상훈(필요시)									
연월일	종류	상훈기관		공적 내용		용역명(필요시)		비고	
제재									
연월일	종류	제재기관		사유 및 기간		용역명(필요시)		비고	

기술인 현황

기록 변경사항

[illegible]

(양식 3)

□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

연 번	건설공사					정기안전점검 등*				수행실적		지분	지분수행실적		비 고
	공사명	시공사	공사기간	공사개요	발주청 (인허가 기관)	용역명	안전점검 종류	건설공사 종류**	용역기간	건수 (A)	준공금액 (백만원) (B)	비율 (C)	건수 (A*C)	지분금액 (백만원) (B*C)	
계						합계				7	310		4.5	200	
1	00도로건설 공사	00건설	'15.1.1. ~'18.12.31.	국도 0Km, 교량 0개소 터널 0개소	00청	00도로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	정기(1차)	교량,터널, 절토사면	'16.1.1 ~ 6.30.	1	30	100%	1	30	
							정기(2차)	교량,터널, 절토사면	'17.1.1. ~6.30.	1	40	50%	0.5	20	
						00도로건설공사 초기안전점검	초기	교량,터널, 절토사면	'18.5.1. ~11.31.	1	90	50%	0.5	45	
2	00하천정비 사업	00건설	'16.1.1. ~'19.12.31.	하천정비 0Km 제방보축 0Km 수문 0개소	00공사	00하천정비사업 정기안전점검	정기(1차)	제방,수문	'17.7.1. ~12.31.	1	20	50%	0.5	10	
							정기(2차)	제방,수문	'18.7.1. ~12.31.	1	30	50%	0.5	15	
						00하천정비사업 초기안전점검	초기	제방,수문	'19.6.1 ~ 11.31.	1	60	100%	1	60	
3	00터널건설 공사	00건설	'15.1.1. ~'18.12.31.	지방도 0Km 터널 0Km	00도청	00건설공사 00터널정밀점검	정밀	터널, 10m이상굴착 폭발물사용	'17.1.1 ~ 12.31.	1	40	50%	0.5	20	

- 1) “정기안전점검 등”이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00조 제1호 각항의 “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”을 의미합니다.
- 2) “건설공사 종류”는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21조 및 별표1 “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”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.
- 3) 수행실적 증빙자료로는 안전점검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하여 준공한 용역계약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설물 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“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”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**3년**이내에 준공한 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제출바랍니다.)

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21조

[별표 1]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

건설공사 종 류		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				
		1차	2차	3차	4차	5차
교 량	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하부공사시공시	상부공사시공시	-	-
터 널		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	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	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	-	-
댐	콘크리트댐	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	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	댐 축조공사 시공시(하상기초 완료 후)	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	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	필댐	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	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	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	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	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하천	수문	가시설공사 완료시(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)	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	-	-	-
	제방	하천바닥 파기, 누수방지, 연약지반 보강, 기초처리공사 완료시	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	-	-	-
하구둑		배수갑문 공사중	제체 공사중	-	-	-
상하수도	취수시설, 정수장, 취수가압펌프장, 하수처리장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구조체공사 초·중기단계 시공시	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	-	-
	상수도 관로	총공정의 초·중기단계 시공시	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	-	-	-
항만	계류시설	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	제작 및 거치공사, 향타공사 시공시	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	숙채움 및 뒷채움공사, 매립공사 시공시	-
	외곽시설(갑문, 방파제, 호안)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, 사석공사 시공시	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	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	숙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	-
건축물	건축물	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구조체공사 초·중기단계 시공시	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	-	-
	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	총공정의 초·중기단계 시공시	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	-	-	-
지하차도, 지하상가, 복개구조물		토공사 시공시	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	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	-	-
도로·철도·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	옹벽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구조체공사 시공시	-	-	-
	절토사면	발파 및 굴착 시공시	비탈면 보호공사 시공시	-	-	-
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		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(콘크리트 타설전)	되메우기 완료후	-	-	-
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		총공정의 초·중기단계 시공시	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	-	-	-

※ [별표 1]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 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·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' 20년 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질의양식

업 체 명	대 표 자	질의내용	비 고

※ 질의사항의 경우 20.5.22.(금) ~ 5.28.(목) 까지 접수된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드립니다. 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시어
정정식 주무관 (persky89@gg.go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